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340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서다빛(공판)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8. 12. 22:16 양산시 B건물, C호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저작물인 "F"를 피해자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고 D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복제(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4.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철 _____